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감사 결과

- ▶ 우리구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 특정감사(복지급여 관리실태) 결과 **총12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를 확인하여 행정상 조치(시정 4건, 주의 8건), 재정상 조치 20,110,954원(반환 20,110,954원), 신분상 조치(훈계 3건)를 처분 요구하고자 함.

I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자체감사의 종류)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제5조 (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 ☐ 2019년 자체감사 운영계획 [감사실-7587 (2018. 12. 21.)]

2 감사대상 및 범위

-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 감사기간 : 2019. 7. 8. ~ 2019. 7. 19.(10일간)
- ☐ 감 사 장 : 상설감사장
- ☐ 감사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
- ☐ 감사대상 : 옥련1동 등 14개 동 행정복지센터

II

대상자 현황

☐ 연수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현황

동	유형	의사무능력자				비고
		계	급여관리 대상자		급여관리 제 외 자	
			지정자	미지정자		
합계		409	88		321	
유형구분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29	8		21	
	정신장애인	156	25		131	
	치매노인	14	3		11	
	18세 미만아동	41	5		36	
	발달장애인	144	41		103	
	기타	25	6		19	
연수구		8	1		7	
옥련1동		20	2		18	2018년 하반기 이후 감사자료 제출
옥련2동		27	6		21	
선학동		58	15		43	2018년 하반기 이후 감사자료 제출
연수1동		27	11		16	
연수2동		15	9		6	2018년 하반기 이후 감사자료 제출
연수3동		82	14		68	
청학동		101	20		81	
동춘1동		18	2		16	
동춘2동		17	2		15	2018년 하반기 이후 감사자료 제출
동춘3동		7	2		5	
송도1동		11	4		7	
송도2동		7			7	
송도3동		7			7	2018년 하반기 이후 감사자료 제출
송도4동		4			4	

Ⅲ

감사 결과

1 총 평

- ▶ 우리구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기초 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복지급여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자 복지급여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 ▶ 감사를 시행하면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대상자 임에도 점검(반기별 1회)을 시행하지 않은 사례, 점검은 하였으나 부적정한 내용이 있음에도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례, 내용상 충분히 복지급여의 부정사용(횡령)이 확인됨에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 ▶ 또한 사회복지전산시스템(행복e음)이 이전 대상자 현황자료(동별 점검대상자, 제외자 등)를 확인할 수 없고 현재 기준의 현황자료만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하고, 복지대상 공무원들이 해당 기간에 누락 없이 적절한 의사무능력자의 복지급여 관리의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사회보장과에 반기별 점검 안내 및 관리(점검내역 확인)를 시행하도록 개선 권고함.
- ▶ 복지업무 담당자들은 점검 대상자들의 비협조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담당자들의 세밀한 점검과 확인이 의사무능력자인 복지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과 직결돼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2 지적사항 목록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12건(시정 4건, 주의 8건) / 재정상 20,110,954원 (반환 20,110,954원)			훈계 3명	
1	○○○○ (1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 급여관리 점검 미실시 1건 ㉡ 급여관리자 복지급여 관리 부적정	주의 및 시정	반환 15,111천원	-	
2	●●●● (1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 급여관리 점검 소홀 1건, 지정 지연 2건 ㉡ 급여관리자(시설장) 지출관리 부적정	주의 및 시정	-	-	
3	○○○○ (1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 급여관리 점검 미실시 15건	주의	-	훈계 1명	
4	◇◇◇◇ (1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 급여관리 점검 미실시 7건, 소홀 5건 ㉡ 급여관리 점검표 확인자(동장) 누락	주의 및 시정	-	훈계 1명	
5	◆◆◆◆ (1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 급여관리 점검 미실시 3건, 소홀 2건	주의	-	-	
6	□□□□ (1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 급여관리 점검 소홀 9건 ㉡ 급여관리자 복지급여 타목적 사용	주의 및 시정	반환 5,000천원	훈계 1명	고발
7	■ ■ ■ ■ (1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 급여관리 점검 소홀 13건	주의	-	-	
8	△ △ △ △ (1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 급여관리 점검 소홀 1건	주의	-	-	

3 신분상 조치

☐ 감사결과 처분 심의 위원회 개최 : 2019. 8. 20.(화)

☐ 대상자 현황

연번	대 상 자			지 적 사 항	처분 내용
	부서	직급	성 명		
1	☆☆☆☆☆	○○○○○○○ ○	◆◆◆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미실시 - 2018년 하반기 점검 미실시 : 15명	훈계
2	≡≡≡≡≡	○○○○○○○ ○	■ ■ ■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미실시 - 2017년 상반기 ~ 2018년 상반기 점검 미실시 : 3회 / 3명	훈계
3	▼▼▼▼▼	○○○○○○○ ○○	♠♠♠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 500만원 개인용도 사용 미조치	훈계

IV 분야별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1.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미실시 【 ○○○○, ◎◎◎,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훈계 2명(◎◎◎,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제1항에 의하면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하려는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급여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급여관리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II.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에 의하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상 후견인이 지정되어 급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하고, 후견인 지정이 어렵거나, 후견인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다만,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임에도 본인이 타인의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나,(사적자치의 원칙) 이러한 경우에도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확인·점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 그리고, 급여관리 점검 제외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수급자의 후견인이 지정되어 법원을 통해 급여관리가 이루어 지는 경우
- (2)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인 경우

※ 직계존속의 범위 : 대상자의 부모 및 (외)조부모

※ 급여관리자인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고령이어서 실제 급여 관리·사용은 형제·자매 등이 함에도 급여관리 점검에서 제외하는 등 급여관리자 지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

- (3)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3촌이내 친족(직계비속 포함)이거나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의 착취·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 직계존속이나 3촌 이내의 친족이라도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관리 점검 대상임

※ 3촌 이내 친족이 수급자의 병원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치료비 결제, 물품구매 대행 등 보호자 역할을 지속하는 기간은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 가능

○ 또한, 급여관리 방법 및 급여관리 상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1)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영수증) 관리

- 급여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고, 급여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현금지출도 허용
- 체크카드 사용 시 통장기재 사항만으로 지출내역 점검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장관리로 지출기록을 갈음하도록 할 수 있음

(2) 읍·면·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 작성(서식 38호 참조)

(가) 점검대상 : 점검제외 대상이 아닌 나머지 가구 전체

(나) 점검내용

- ①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급여수령 여부
- ② 급여관리자의 급여 사용 실태 점검시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점검하고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되 고령 등의 이유로 급여관리자에 대한 정리가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 구술로 확인하여 기재
- ③ 부양의무자 등이 가족이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 영수증 보관·관리로 지출기록을 대체 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한 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급여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수급자 생활실태 등을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

- 그러나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7년 하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대상자 2명중 1명을 점검하지 않았고,
-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8년 하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을 2019 1. 31까지 의사무능력 수급자 15명에 대하여 실시한다는 내부결재 【◎◎◎-8412(2019.01.31.)】를 득하고 대상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대상자 임에도 행복 e음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아 2017년 상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대상자 2명)을 하지 않았고, 2017년 하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대상자 3명 중 2명과 2018년 상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대상자 5명 중 3명을 점검하지 않았으며,
-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8년 하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대상자 9명 중 3명을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 ●●●●, ◇◇◇◇, ◆◆◆◆, □□□□,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규정에 따르면 의사무능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가 수급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반기별로 수급자 거주 현황, 지출내역과 영수증 일치여부, 및 타인사용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러나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의사무능력 수급자의 급여관리자가 2016년 8월부터 매월 수급자의 생계급여 계좌에서 현금 500,000원씩 인출하여 국민은행에 급여관리자명의로 적금계좌를 개설하여 2017년 6월까지 12,000,000원의 적금을 납입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시정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자 ◆◆◆)는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하반기 2회 점검기간 동안 급여관리자가 4,340천원을 인출하고도 이에 대한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가 1,521천원 밖에 되지 않아 2,819천원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나 시정 요구 등을 하지 않은 사실,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자 ◆◆◆)는 2018년 하반기 급여관리자가 6개월의 점검기간 중 1개월분의 내역서만 제출했음에도 5개월분의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한 추가 확인이나 시정 요구 등을 하지 않은 사실,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자 ◆◆◆)는 2018년 상반기 및 하반기 급여관리자가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점검표만 작성한 사실,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자 ◆◆◆)는 2018년 하반기 급여관리자가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점검표에 양호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자 ◆◆◆)는 2018년 하반기 급여관리자가 현금인출(5회/1,500천원)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추가 확인이나 시정 요구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자 ◆◆◆)는 2018년 하반기 급여관리자가 현금인출(7회/4,830천원)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6개월의 점검기간 중 2개월분의 사용내역만 제출하였음에도 추가 확인이나 시정 요구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대한 반기별 점검을 하면서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자 ◆◆◆)은 2017년 상반기 부터 반기별 4회 점검기간 동안 급여관리자가 현금인출(14회/8,650천원)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34건/2,053천원만 제출하였고, 계좌이체(11건/2,950천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는 등 급여사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였으나 추가 확인이나 시정 요구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자 ◆◆◆)은 2018년 상반기 및 하반기 점검기간 동안 통장 입출금 사본(2018년 1월 ~ 4월분), 급여 입출금내역(2018년 5 ~ 6월)과 현금인출(31회/2,590천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추가 자료확인이나 시정 요구 등을 하지 않았고,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자 ◆◆◆)는 2018년 상반기 및 하반기 점검기간 동안 현금인출(13회/11,649천원)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급여관리 조사 담당 공무원은 급여관리자가 고령이고 직계존속인 어머니라는 이유로 추가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점검표에 양호로 기재한 사실이 있고,

-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7년 및 2018년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에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자 ◆◆◆, ◆◆◆)에 대하여 2017년 상·하

반기 및 2018년 상·하반기 지출내역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점검(2017년 상·하반기 2018년 하반기 양호 기재, 2018년 상반기 미기재)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2017년에 타인 사용 입출금 내역(총 5회 총 3,702,500원을 숙모의 계좌로 이체하였음)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자 ◆◆◆) 및 ◆◆◆·◆◆◆(급여관리자 ◆◆◆)에 대하여 2017년 상반기 지출내역 기록 및 증빙자료(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점검표에 양호로 작성한 사실,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자 ◆◆◆)에 대하여 2017년 하반기에 6백만원을 인출(예금)한 기록이 있음에도 예금통장 확인(예금주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자 ◆◆◆) 및 ◆◆◆(급여관리자 ◆◆◆)에 대하여 2018년 하반기 적금 저축 내역이 있음에도 점검표에 미가입으로 작성한 사실,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자 ◆◆◆)에 대하여 2018년 하반기 900,000원 현금 출금에 대한 지출기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점검표에 양호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자 ◆◆◆)의 2017년 하반기 급여관리점검표 최종결과가 “양호”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중 23건의 사용처가 강남구(18건), 서초구(5건)로 의사무능력 수급자의 거주상태 및 실사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한 점검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복지급여 관리 부적정 【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반환 ○○○○ 15,110,954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규정에 따르면 의사무능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가 수급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반기별로 수급자 거주 현황, 지출내역과 영수증 일치여부, 및 타인사용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러나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7년 11월 ●●●●에서 전입한 의사 무능력 수급자의 급여관리자가 2016년 8월 국민은행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적금 통장으로 ●●●●에 이어 ○○○○에서도 수급자의 생계급여 통장에서 매월 500,000~7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월 500,000원씩 적금으로 납입하였으며 2017년 12월말까지 총 15,000,000원을 불입하였다. 그리고 2018.10.04.에 위 적금을 해약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15,110,954원을 본인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해약금으로 2019.02.26.에 국민은행 포천점에서 급여관리자 본인 명의로 특정금전신탁(ELS 19-176호 원금비보장형)에 10,000,000원을 가입하였고 나머지 해약금 5,110,954원은 본인의 일반통장에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 중인 사실이 있어 수급권자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보관 되어야 할 급여가 부당하게 인출되어 수급권의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나,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7년 하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시 이를 점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급여 관리자 ◆◆◆ 명의로 된 적금과 일반예금이 수급자에게 반환토록 시정되지 않은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개인 운영시설 입소자인 의사무능력 수급자(18세 미만) ◆◆◆, ◆◆◆, ◆◆◆에 대해 시설장은 급여에 대한 지출·관리상황을

기록·관리하고 읍·면·동장은 매 반기별 급여 관리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나 의사무능력 수급자에 대한 지출내역 및 지출잔액 기록 누락, 시설 퇴소자 생계급여 정산 미 실시 등 지출·관리상황에 대한 기록·관리가 미흡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급여관리자 복지급여 타목적 사용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고발조치), 재정상 반환 5,00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규정에 따르면 의사무능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가 수급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반기별로 수급자 거주 현황, 지출내역과 영수증 일치여부, 및 타인사용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러나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8. 6. 7. 급여관리자 ◆◆◆은 수급자 ◆◆◆의 계좌에서 5,000천원을 인출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8년 상반기 점검에서 담당공무원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상환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하나 점검표에는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고 현재(2019. 7. 19.)까지 시정되지 않았다.(이후 2019. 7. 23. ◆◆◆은 1,000천원을 상환하고 매달 일정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함)

V

권고사항

1 문제점(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 사회복지전산시스템(행복e음)

- 현행 사회복지전산시스템은 입력된 자료(동별 점검대상자, 점검제외자 등)가 변경될 경우 자료가 변경된 현재일 기준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나 변경되기 이전의 기간으로는 당시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 대상 시기별 복지급여 관리실태 점검시 확인 곤란

: 당시 계획서 및 내부결재 자료 등 별도의 증빙자료 필요

☐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점검 미흡

- 담당자의 인사이동 : 해당 복지업무 담당직원의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매년 반기별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점검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담당자의 업무내용 미숙지 : 담당자 업무 미숙지 등의 사유로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점검을 부적정하게 시행

2 권고사항☐ 점검 전 사업안내

- 주관부서(▽▽▽▽▽) 사업시행 1개월 전 사업안내 : 공문발송
- 내용 : 사업시기, 관련규정 및 안내자료 등

☐ 점검자료 취합·관리 및 사례전파

- 각 동별 점검자료 취합, 현황자료 작성
- 점검에 따른 문제점 발생 등 사례관리 및 내용전파

VI

행정사항

- 복지급여 관리실태(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지침 숙지하여 업무 처리
- 지적 사항 중 시정 건에 대해서는 처리전말보고서와 증빙서류(원본대조필)를 첨부 제출 : 2019. 10. 21.(월) 까지
-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 감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 재심의 신청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